

##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106-0019971
신청일	2021-06-01 15:04:30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진행결과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 민원 내용

제목 내용	<p>아파트 펜트리(창고) 소방시설 설치 의무 여부 안녕하십니까.</p> <p>저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7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p> <p>입주자 사전점검 중 신발장 펜트리 공간에 소방시설(감지기 外)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보고 미시공 사항으로 지적했더니</p> <p>전 세대 공통된 사항이라는 답변만 왔습니다.</p> <p>해당 펜트리는 신발장처럼 가구로 일체화된 공간도 아니며,</p> <p>2015년 1월 이후로 감지기 설치 관련된 면적 제외기준도 없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면적이 작은 펜트리(창고)에는 감지기나 스프링쿨러 설치가 제외되는 기준이 있는것 인지요?</p> <p>아니면 아무리 작은 공간에도 구획된 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p>
첨부 파일	펜트리.png IMG_6178.jpg

##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6-0029453
접수일	2021-06-01 15:45:38
담당자(연락처)	차선영(044-205-7553)
처리에정일	2021-06-18 23:59:59

## 답변 내용

통지일	2021-06-07 21:01:38
처리결과 (답변내용)	<p>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106-00199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p> <p>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세대내 팬트리(창고) 소방시설(감지기,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p> <p>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p> <p>답변1) 감지기 설치 관련 : 붙박이 장, 신발장은 별도 구획된 실이 아닌 가구로 판단하여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그러나 '팬트리 룸(창고), 드레스 룸'이 다른 장소와 구획되어 있는 경우 구획된 실마다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구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다른 장소(거실 등)의 면적과 합산하여 감지기 유효면적을 계산한 후 규정에 맞추어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p> <p>사진상으로는 팬트리(고정식 가구류)로 추정되어 감지기 설치를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도면 및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 소방서 건축민원담당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 받으시길 바랍니다.</p> <p>답변2)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관련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벽과의 거리는 10cm 이상으로 합니다. 제2호에 따라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합니다. 제3호에 따라 살수장애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합니다. 다만, 장애물을 폭의 3배이상 이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살수장애는 스프링클러헤드에서 방사되는 물이 살수패턴 형성이 되지 않게 가까운 위치에 장애물이 있거나 헤드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 너머로 살수가 되지 않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질의 대상 아파트 팬트리실 등 소규모 실의 경우 해당 공간의 여건상 60cm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공간규모 등을 감안하여 살수장애의 영향이 가급적 적은 위치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팬트리실 등은 현장 여건상 소규모실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살수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헤드의 살수(살수 패턴 테스트)로 전체구역에 살수가 가능한 경우 살수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제7항제3호에 따라 헤드의 반사판이 천정으로부터 30mm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헤</p>

드의 살수 패턴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207P(장애물의 살수장애구역 예)를 참고하여 관할소방서와 협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소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시설민원센터 차선영(044-205-7553)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인쇄